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공법)명 : 시멘트 모르타르의 성능 최적화 및 균열 제어를 위한 보강 섬유인 균등분산용 특수 분사장치를 사용하는 열화콘크리트 보수공법
 - 특허번호 : 제10-0926526호
- 발주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 특허적용 공사명 : 북악산로825-36~정릉로38마길26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 세기하이테크건설(주) 대표이사 김형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북악산로825-36~정릉로38마길26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사의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이 협약은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 부분만(기술사용,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설계내역서 포함)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공사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공사낙찰자”로부터 지급 받는 것을 포기한다.

②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하여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공사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 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



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특허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8년 2월 21일



발 주 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 세기하이테크건설(주) 대표이사 김형진 (인)

